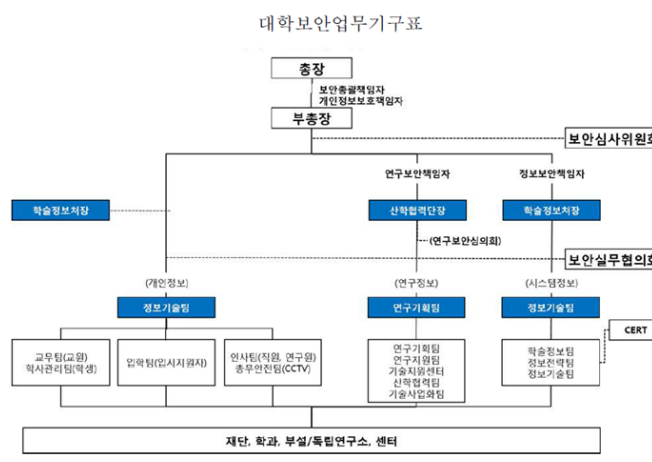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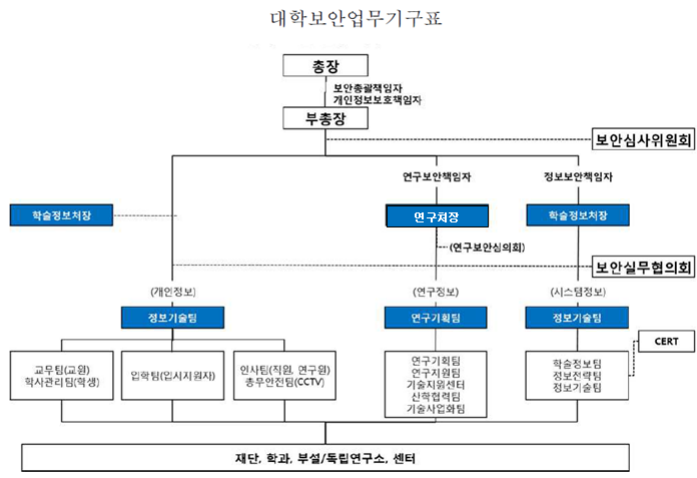


## 보안업무규정 신규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7조(보안심사위원회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(신설)</p>	<p>제7조(보안심사위원회) ① (현행과 동일)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동일)                      ③ (현행과 동일)                      ④ 연구보안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연구산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.</p>	<p>* 4항 신설                      *연구보안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경</p>
<p>(별지 서식 제1호) 보안업무기구표</p> 	<p>(별지 서식 제1호) 보안업무기구표</p> 	<p>* 연구보안책임자 변경                      (산학협력단장 → 연구처장)</p>

개정 전		개정 후		비고
(별지 서식 제2호) 보안심사위원회		(별지 서식 제2호)보안심사위원회		
직 위	비 고	직 위	비 고	
부총장	보안총괄책임자, 개인정보보호책임자	부총장	보안총괄책임자, 개인정보보호책임자	
기획처장		기획처장		
교무처장		교무처장		
입학학생처장		입학학생처장		
산학협력단장	연구보안책임자	산학협력단장	연구보안책임자(삭제)	
연구처장		연구처장	연구보안책임자	
산학처장		산학처장		
학술정보처장	정보보안책임자	학술정보처장	정보보안책임자	
행정처장		행정처장		
보안업무실무부서장		보안업무실무부서장		